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00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8월 12일

발 의 자: 김 경, 김규남, 남창진,
박강산, 박승진, 박철성,
서상열, 아이수루, 유정희,
, 이원형, 이종환 의원(11
명)

1. 제안이유

-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'서울특별시립박물관'의 관람료 면제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여 임산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임산부에 본인 대한 관람료 면제(안 제5조제1항제18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관람료의 면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17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18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5조(관람료의 면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7. (현행과 같음)</p> <p>18. 「<u>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」에 따른 <u>임산부 본인</u></p> <p>19. (현행 제18호와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5조(관람료의 면제) 제1항제18호를 변경·신설함에 따라 관람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소관부서 확인결과 현재 서울시립박물관은 제4조(관람료)제1항1)에 따라 무료관람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규정신설에 따른 추가적인 세입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 - 현행 같은 조례 제4조(관람료)제2항2)에 따라 박물관³⁾ 자체 기획전시나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,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유선조사 결과 현재 까지 관람료를 받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며, 이에 향후 발생할 개연성 또한 드물기 때문에 예외적 상황으로 함
- 또한, 동 개정안은 정책에 따른 혜택 대상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 희 선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「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4조(관람료)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**무료**를 원칙으로 한다.
2) 「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4조(관람료)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나 전시실을 대관받아 전시를 하는 경우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
3) 서울역사박물관, 청계천박물관, 서울생활사박물관, 한성백제박물관, 서울우리소리박물관, 서울공예박물관 (총 6개 박물관)